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0 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서일준·박대수·지성호

김용판 · 정희용 · 이주환

하영제 • 백종헌 • 이종성

김태흠 • 양금희 • 홍준표

서병수 · 태영호 · 김형동

윤창현ㆍ이채익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·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「하천법」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재해,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

유수면 점용·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·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포함한다)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"을 "포함한다)로부터 매년"으로, "징수하여야한다"를 "징수하되, 점용료·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공유수면관리청이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재해,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 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) ① -----징수)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 용·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 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 은 자(제38조제1항에 따라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, 다른 법률에 따라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 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・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로 -----<u>포</u>함한다)로부터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매년----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"점용료·사용 료"라 한다)를 징수하여야 한 -----장수하되, 점용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료·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---다.

| 1. ~ 14. (생 략) | 1. ~ 14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15. 재해, 천재지변의 발생 및 |
| |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|
| |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·사용 |
| |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|
| ② ~ ⑧ (생 략) |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|